#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호 8501

제안연월일: 2025. 2.

제 안 자 : 환경노동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	경 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3996호)	조지연	2024. 9. 12.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 회의(2024.11.21.) 상정 후 제안설 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 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4658호)	강득구	2024. 10. 11.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2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6056호)	박용갑	2024. 11. 29.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02.1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06106호)	박용갑	2024. 12. 2.	「국회법」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02.13.)

나.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2025. 2. 18.)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5. 2. 20.)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일상생활 속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고, 법 시행(2024.1.1.) 이전부터 동일한 목적으로 운행하여 온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운행가능하도록 함.

그런데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교육시설의 장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차량의 소유주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법시행 이전부터 기존에 운영하여 온 경유자동차를 행정상의 명의 변경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경유자동차를 대체할 자동차가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아니하거나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어려워 동 제도의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있음.

이에 특정 목적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협조 요청의 대상을 확대하고, 예외 근거를 마련하며, 적용례 기준

을 변경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2제3호 신설).
- 나.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제작자에게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제작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어린이통학버스용도로 사용하는 대체 자동차를 위 한 기반 시설 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 함(안 제28조의3).
- 다. 어린이 통학버스 용도로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 시행이전부터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사용되어 온 기존 경유자동차의 경우에는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적용례 기준을 '차량소유자'에서 '같은 용도의 차량'으로 정비함(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 4. 부대의견

환경부는 경유자동차를 대체하는 전기승합차의 생산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제3호"를 "제28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대체 자동차의 수급 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를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28조의3 전단 중 "필요한 경우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에게 제28조 각 호의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하도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협조요청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를 "협조요청을 받은 자'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 차제작자"라 한다)에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 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 및 제작하도 록 요청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28조제1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위한 차고지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반시설 확보를 요청하는 경우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 자가 해당 어린이통학버스를"을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같은용도로"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행 혂 개 정 안 제28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로 제28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 한 특례) 제28조제3호에도 불 한 특례) 제28조-----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그 밖에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대체 자동차 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 시하는 자동차를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제28조의3(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 한 협조 요청) -----한 협조 요청) 환경부장관은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다음 각 호의 어 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 동차제작자"라 한다)에게 제28 조요청을 받은 자-----

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을 중단하거

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하 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동 차제작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 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 제3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 자동차 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 례) ① 법률 제16305호 대기관 | 례) ① -----

- 1.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 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에 게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제작 을 중단하거나 대체 자동차를 우선 출고 및 제작하도록 요 청하는 경우
- 2.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28조 제1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를 위한 차고지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반시설 확보를 요청하는 경우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 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자동차 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

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호 및 제2호 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 1.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만, 이 법시행 전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소유한 자가 해당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 4. (생략)
- ② (생략)

<u>.</u>
1
신고된 어린
이통학버스를 같은 용도로
2. ~ 4. (현행과 같음)
① (처체코 가 )

② (현행과 같음)